

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(제33조 관련)

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	교정주기
1. 계량기 형식승인·검정 또는 정기·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	
가. 기준 분동	
1)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	2년
2) 그 외의 기준 분동	4년
나. 기준 부피 탱크	2년
다. 기준 가스미터	2년
라. 기준 액체용 유량계	2년
마. 기준 전력량계	2년
2. 곡물수분측정기(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)	2년